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탁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구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원탁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원탁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원탁회의 기능) 원탁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탁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원탁회의 운영) ① 원탁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탁회의 참석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③ 원탁회의는 참석자 전원의 정책결정을 위한 합의도출 방식으로 운영한다.

④ 시장은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제안된 의제 중에서 선정한다.

⑤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원탁회의 결과 조치)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원탁회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원탁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

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탁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 제안
2. 원탁회의 운영계획 수립·변경
3. 토론주제에 따른 토론방식, 참여자 공모 및 선정방법
4. 원탁회의결과 시정 반영방안 강구
5. 그 밖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행정안전국장, 소관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토론주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원탁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원탁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포상) 원탁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원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원탁회의 운영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안)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계	연 2회	80,000천 원
사무위탁 및 위원회 운영	- 전문기관 위탁 · 주제연구, 자료수집, 사전조사 실시 · 홍보, 참여자 모집, 장소임차 등 -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000원X20명X6회=8,400천 원	30,000천 원
전문업체 용역	- 원탁회의 장비임차 및 인건비 등	50,000천 원

4. 작성자

- 새마을과 시민협치담당 황경아(054-480-6812)

소관 실·과		새마을과
입 안 자	과 장	권 영 복
	담 당	이 연 경
	담 당 자	황 경 아 (480-6812)